

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의 선정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하고 있음(안 제16조제5항).

○ 그러나,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, 동 기관이 시설관리를 위한 서울시가 설립한 전문적인 기관이긴 하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만큼 안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, 체육시설을 건담 관리하는 기존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의 혼동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음.

○ 따라서 조직증원의 문제나 전문적, 기업적 경영능력을 고려한 결정 등 현실적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로서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 조례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그 밖의 개정조항은 폐지되는 체육시설을 정리하거나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기본건용사용료를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,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  
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925
----------	-----

2001년 9월 일  
문화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년 8월 20일,  
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  
위원회(2001.9.4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국장 임재오)

가. 제안이유

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, 또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,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의 투명성확보,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확대 등을 위하여 일부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우리 시 문화관광분야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

-전문화·다양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추세에 맞추어 필요한 분야별로 해당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여 심의·자문토록 하고,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되도록 함.

○ 문화예술진흥법령 개정(2000.10.23)에 따라 현행 “전문예술단체”만 지정·육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“전문예술법인”까지 시지정 전문예술법인·단체로 지정·육성할 수 있게 그 범위를 확대함.

○ 미술장식품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미술장식품을 제작·설치하도록 건축주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,

-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결과를 시보(市報)에 공개토록 하며  
-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수시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였음.

○ 금리하락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규모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, 현행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정 총액의 60%를 당해년도 지원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을, 80%로 확대하여 지원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시민문화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윤병국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, 또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,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의 투명성확보,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확대 등을 위하여 일부규정을 현실

<p>에 맞게 정비하려고 제안된 것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 내용을 보면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행 상설로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안건에 따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고(안 제2조),</li> <li>-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(전문예술법인등의 지정·육성)의 개정(2000. 10.23)에 따라 현행 "전문예술단체"만 지정·육성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"전문예술법인"까지로 확대하고(안 제13조),</li> <li>- 미술장식품의 제작·설치시 건축주에게 공모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(안 제17조)등으로 되어 있음.</li> </ul> </li> <li>○ 먼저 상설로 운영해 오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(안 제2조)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두되 그 세부적인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법정위원회로, 동법상의 취지상 위원회의 상설 또는 비상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방법이라면 비상설적인 운영 형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.</li> <li>- 현행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 또는 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을 상설 또는 비상설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기준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보며, 그 위원회의 존립목적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봄.</li> <li>-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장·단기적인 정책에 관하여 매년 1~2회 정도 자문에 응하는 등 수시로 개최되지 아니한 점과 문화예술분야가 점차 전문화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동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</li> <li>- 다만, 안 제4조제1항의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, "회의안건의 내용"에 따라 13인</li> </ul> </li> </ul>	<p>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바, "회의안건의 내용"에 대한 임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위원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그밖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위원장 선임방법, 회의정족수, 회의통보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"전문예술단체"에서 "전문예술법인"으로까지의 확대와 관련(안 제13조),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.10.23 개정됨에 따라 현행 "전문예술단체"만 지정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"전문예술법인"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 사항임.</li> </ul> </li> <li>※ 시지정 전문예술법인·단체로 지정될 경우의 법률적 혜택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인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도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게 되고, (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제2항),</li> <li>- 기부자의 경우 개인소득의 10%, 법인수입의 5% 한도 내에서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가 가능하며, (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6호)</li> <li>-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면세대상 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포함되면 법인세를 면세받게 됨. (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9조의2)</li> <li>- 또한 그 지정대상에 있어서도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예술단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,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국가지정전문 예술법인·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대예술공연장 운영법인과 전시행사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</li> <li>- 다만, 현행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"전문예술단체"를 지정 할 수 있고 지정에 따른 예산지원 등의 진흥책이 있었음에도 동 조례 시행규칙은 물론 "전문예술단체"의 지정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번에 "전문예술법인"이 추가되긴 하지만 조</li> </ul> </li> </ul>
---	---

<p>레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련 세부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-그밖에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취소, 지원·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</p> <p>○ 미술장식품을 제작·설치할 경우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한 방법에 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안과 관련하여(안 제17조),</p> <p>-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일정규모나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의무로 제작·설치하여야 하나, 그동안 미술장식품을 제작하는 예술가와 건축주와의 암묵적인 거래 관행 및 비리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한 방법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자 하는 내용임.</p> <p>-이 경우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공모를 통하지 않은 방법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긴 하지만 건축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줄으로써 어느 정도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다만, 공모를 통한 경우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상의 묘를 기한다고 하나 이 경우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</p> <p>-그밖에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, 가격결정,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기능, 위원의 구성 및 해촉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</p> <p>○ 기타,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행 "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"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을 "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회"로 명칭변경하는 안(안 제33조)과 당초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소관사항이던 기금의 조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회의 기능으로 변경하는 안(안 제34조),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정총액의 확대하는안 (60%→80%, 안</p>	<p>제30조)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포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</p> <p>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</p> <p>가. 수정이유</p> <p>문예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육계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임 회수를 구체화함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○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에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 포함(안 제4조제2항)</p> <p>○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5조제3항)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>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중 "위원장 1인"을 "위원장 2인"으로, "20인 이내의"를 "25인 이내의"로 하고, 동조제2항중 "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"를 "위원장 중 1인은 행정(1)부시장을 당연직위원장으로 하고,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"로 한다.</p> <p>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7. 박물관 운영전반에 관한 발전적 대안 제시</p> <p>8. 기타 위원장 또는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 <p>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1조의2(소위원회 구성·운영)①위원회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p> <p>부 칙</p>
--	--